

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미래성장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0-132
----------	-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0. 10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마포 미래성장자문단의 분야별 세분화 및 전문 인력 확충으로 다양한 전문가 및 지역원로의 지식과 경험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하여 급변하는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마포미래성장자문단의 구성 변경 및 위원수 확대(안 제3조제1항~제2항, 제4항~제5항)
- 나. 폭넓은 의견청취를 위한 조항 추가(안 제10조제2항~제3항)
- 다. 마포구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내용 정비(안 제11조)

3. 주요 토의과제

없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1) 「지방자치법」 제116조의 2(자문기관의 설치 등)
- 2)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80조(자문기관의 설치요건), 제80조의2(자문기관의 구성), 제80조의3(자문기관의 존속기한)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타사항

- 1) 입법예고 : 2020. 9. 10. ~ 9. 30. (제출된 의견 없음)
- 2)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자율평가 결과 : 해당없음
- 3) 기획예산과의 위원회 사전심사 결과 : 해당없음
- 4) 기획예산과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: 원안 동의
- 5) 여성가족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: 해당없음
- 6) 제1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·의결(2020.10.6.)

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미래성장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미래성장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자문단은”을 “자문단은 정책 분야별로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각각 위원장”을 “분야별로 각각 위원장”으로, “지역원로회의는 25명 이내, 전문가회의는 15명”을 “각각 30명”으로, “각각 구성한다”를 “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”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5항을 제4항으로 하며, 같은 항(종전의 제5항) 중 “전문가회의 위원은”을 “각 회의의 위원은 지역발전에 관심이 많고”로 한다.

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전체회의의 위원장은 각 회의의 위원장 중에서 호선한다.

제10조의 제목 “(의견청취)”를 “(의견청취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자문단은 제2조 각 호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워크숍·토론회·세미나·포럼·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.

③ 구청장은 제2항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1조(수당 등) 구청장은 회의 등에 참석한 위원 또는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.

1. 마포구 소속 공무원이 자문단 위원으로 참석한 경우
2.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(이하 “구의원”이라 한다)이 구의원의 자격으로 참석한 경우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구성) ① <u>자문단은 지역원로 회의와 전문가회의(이하 “각 회의”라 한다)로 각각 구분하여 구성 및 운영하며, 필요한 경우 전체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<u>각 회의는 각각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두고, 지역원로 회의는 25명 이내, 전문가회의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각각 구성한다.</u></p> <p>③ (생략)</p> <p>④ <u>지역원로회의 위원은 지역발전에 관심이 많고 학계, 언론계, 법조계 등에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.</u></p> <p>⑤ <u>전문가회의 위원은 자치행정, 복지, 경제, 관광, 환경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.</u></p> <p>제4조(위원장 등의 직무) ① (생략)</p>	<p>제3조(구성) ① <u>자문단은 정책 분야별로 -----</u>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----- <u>분야별로 각각 위원장 -----</u> ----- <u>각각 30명 -----</u> ----- ----- <u>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.</u>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<삭 제></u></p> <p>④ <u>각 회의의 위원은 지역발전에 관심이 많고 -----</u> ----- -----.</p> <p>제4조(위원장 등의 직무) ① (현행과 같음)</p>

② 지역원로회의의 위원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전체 회의를 하는 경우에는 전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.

③ (생략)

제10조(의견청취) (생략)

<신설>

<신설>

제11조(수당 등) 자문단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제10조에 따라 자문단 회의에 출석한 마포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② 전체회의의 위원장은 각 회의의 위원장 중에서 호선한다.

③ (현행과 같음)

제10조(의견청취 등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

② 자문단은 제2조 각 호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워크숍·토론회·세미나·포럼·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.

③ 구청장은 제2항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11조(수당 등) 구청장은 회의 등에 참석한 위원 또는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.

1. 마포구 소속 공무원이 자문단 위원으로 참석한 경우
2.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(이하 “구의원”이라 한다)이 구의원의 자격으로 참석한 경우

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미래성장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- 비용발생 요인 : 자문단 회의 수당 및 워크숍 등 개최비용
 - 제10조(의견청취 등) ② 자문단은 제2조 각 호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워크숍·토론회·세미나·포럼·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.
 -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 - 제11조(수당 등) 구청장은 회의 등에 참석한 위원 또는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제2항제1호
 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,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- 연평균 1억원 미만 예산의 범위에서 마포미래성장자문단 운영

4. 작성자 : 마포1번가연구단 이지예 (☎ 3153-8082)